

지휘서신 제6호: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 고용의기회균등(EE0)

1. 관련근거

- 가. 美육군규정 690-12 고용의기회균등및다양성 (2019. 12. 12.)
- 나. 美육군규정 690-600 고용의기회균등에관한사건처리기준 (2004. 2. 9.)
- 다. 美8군 지휘서신 제8호 (2023. 5. 18.) 고용의 기회균등에 관한 사건처리 절차

2. 본 서신은 기회균등 관련 차별 행위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배경

가. 주요직위자는 고용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란 어느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 신체·정신적 장애, 징계 전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정치적 성향, 유전적 특성 등을 이유로 특정 인원의 고용 기회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정책, 원칙 및 관행을 말한다.

나.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은 고용에 관련한 모든 방면에서 기회의 균등과 가치의 다양성을 견지한다. 모든 소속 군무원, 소속되었던 군무원, 군무원에 지원한 자는 모두 육군규정 690-600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연령(40세 이상), 신체·정신적 장애, 징계 전력,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정치적 성향, 유전적 특성 등을 이유로 고용에 관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에 관하여 신고할 권리가 있다. 위와 같은 고용기회의균등(EE0)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다. 기회의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은 채용, 진급, 배치·발령, 교육 및 연수 등을 포함하는 인사·고용상의 제도, 관행 및 의사결정 등을 말한다. EE0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원은 EE0 담당자, 전문가, 실무관 또는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는 다음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1) 혐의가 되는 사실의 차별적 행위 또는 관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 2) 혐의가 되는 사실의 인사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45일 이내
- 3) 피해자가 혐의가 되는 사실의 차별 행위 또는 관행을 인지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단, 위 기간은 육군규정 690-600 제3조 제4항 (b)호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다.

4. 세부내용

가. 주요직위자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절차를 일상적인 활동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상급자로서의 위치로 인하여 그들의 행위가 조직의 업무환경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침을 이해한다. 모든 인원은 차별이 없고 서로 존중하며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EEO, Anti-Harrassment, NoFEAR 교육이 요구된다.

나. 신고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실무자 선에서의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강구한다. 상부에 보고될 경우, 관리자 및 감독자는 신고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모색하며 EEO 담당자와 협조한다.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타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 모든 개인은 신고자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5. 지휘관은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은 우리의 임무의 근간이 되며 직원들은 차별 없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휘관의 의지를 각 급의 주요지위자들이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6. 이 지휘서신에 관한 담당부서는 8군 Equal Opportunity Office (DSN (315) 755-0320/21)로 한다. 끝.



WILLIAM D. TAYLOR
Major General, USA
Commanding

